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명: 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(펀드코드: DX291)
(변경 전: 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)

2. 변경 시행일: 2026.07.29(수)

3. 변경 내용 요약

: 일반형에서 모자형(자투자신탁)으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

4.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표지			
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모자형 변경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 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모자형 변경	10.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 후 ,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“DB글로벌자산관리 솔루션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0.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“DB 뉴욕라이프 글로벌자산관리 EMP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모자형 변경	14. 이 집합투자기구는 (이하 생략)	14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(종전과 동일)
요약정보			
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모자형 변경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 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표지	모자형 변경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50% 이상을 주식, 채권 및 대체자산 등 관련 국·내외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(이하 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이 투자신탁은 국내·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(종전과 동일)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모자형 변경	- 이 투자신탁은 국·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)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- 또한,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수익률(Target Return, [국고채3년금리(3개월평	▪ 이 투자신탁은 국내·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)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▪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별 환해지를 시행합니다. • 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투자전략 - 이 투자신탁은 주식, 채권, 대체자산 등

		군) + 1.5%] 내외)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, 주식,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·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.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투자기간 및 가입/환매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 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은 미래의 확정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- 자산별 기대수익률, 최대하락율,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의 30% 이상 100% 이하 수준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.	관련 국내·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다양한 자산의 기대수익률, 위험, 상관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탄력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수익률(Target Return, [국고채3년금리(3개월평균) + 1.5%] 내외)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, 주식,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·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.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투자기간 및 가입/환매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 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은 미래의 확정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자산별 기대수익률, 최대하락율,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의 30% 이상 100% 이하 수준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.
분류	모자형 변경	(신설)	모자형
투자비용	모자형 변경	(주1) 상기 합성 총보수 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<u>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</u>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.	(주1) 상기 합성 총보수 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(<u>자투자신탁</u>)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(<u>자투자신탁</u>)이 <u>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</u>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.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모자형 변경	재간접투자 위험 <u>이 투자신탁</u>(이하 생략) 상장폐지 위험 <u>이 투자신탁</u>(이하 생략) 환율변동 위험 <u>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/u>(이하 생략)	재간접투자 위험 <u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</u>(종전과 동일) 상장폐지 위험 <u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</u>(종전과 동일) 환율변동 위험 <u>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/u>(종전과 동일)
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	모자형 변경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 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2.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형태	모자형 변경	마. 특수형태 : (신설)	마. 특수형태 : <u>모자형(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)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	모자형 변경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 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- 일반형에서 모자형(자투자신탁)으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
5.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	업데이트 및 모자형 변경	-	최근일자 업데이트 *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6.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형태	모자형 변경	(신설) -	모자형 구조도 수정
6.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 조	모자형 변경	(신설)	<u>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2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</u> (표 추가) <u>*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</u>
7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	모자형 변경	이 투자신탁은 국내·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)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(신설)	이 투자신탁은 국내·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) <u>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</u>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<u>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의 투자목적</u>
8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모자형 변경	-	자집합투자기구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투자제한 추가
8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다. 편입한 집 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	모자형 변경	<u>이 투자신탁</u>	<u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</u>
9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 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	모자형 변경	-	자집합투자기구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, 수익구조 추가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나 수익구조	모자형 변경	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, 채권,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·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에 주로 <u>투자하므로</u>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됩니다.	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, 채권,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·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에 주로 <u>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</u>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모자형 변경	(신설)	<u>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.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모자형 변경	<u>환율변동 위험</u> <u>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/u>(이하 생략) <u>환헤지에 따른 위험</u> <u>이 투자신탁</u>(이하 생략)	<u>환율변동 위험</u> <u>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/u>(종전과 동일) <u>환헤지에 따른 위험</u> <u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</u>(종전과 동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모자형 변경	이 투자신탁은 <u>주식, 채권,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·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</u> (이하 생략)	이 투자신탁은 <u>주식, 채권,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·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</u> (종전과 동일)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가. 매입	모자형 변경	(신설)	<u>(4)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</u> 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나. 환매	모자형 변경	(신설)	<u>(3)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</u>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</u>
12. 기준가격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모자형 변경	(신설)	<u>※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. 그러나,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

기준가격 산정 방법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모자형 변경	주3) 합성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<u>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</u>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	주3) 합성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(<u>자투자신탁</u>)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(<u>자투자신탁</u>)이 <u>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</u>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모자형 변경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<u>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 후</u>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“DB글로벌자산관리 <u>솔루션</u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“DB <u>뉴욕라이프</u> 글로벌자산관리 <u>EMP</u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개정 반영	2)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2)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